가 (: :

[시행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4호, 2019.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2347

- **1** ()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축산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 1.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 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2 **2(**)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 종계·종오리의 알
 - 2. 「축산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 3.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 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본조신설 2019. 12. 31.]

- 3 ()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 **4** 삭제 <2017. 6. 28.>
- 5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1., 2019. 12. 31.〉
-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1.〉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 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1.〉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1. >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1. 21.〉

- 6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 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2. 양도 · 양수 · 이동 신고: 양도 · 양수 · 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 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7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 ·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9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10** ()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10 2(가**)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10 3(가 가) 영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 **11** (**가**)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 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13 ()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개정 2019, 12, 31, >
- 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 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14 (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 14 2()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 14 3()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 14 4()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 **14 5(**)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2018.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16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 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 17 ()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 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목개정 2017. 6. 28.]

-)①「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 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 ·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19**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20 ()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

- 1. 식육포장처리업자
- 2. 식육판매업자
-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 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 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 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 25조 및 별표 8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
- 21 ()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 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22 (가**)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2019. 12. 31. >
-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 2. 종돈의 종류
-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 · 양수 · 이동 내역
-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 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 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 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 10.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
- 11. 소 · 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 12. 소의 브루셀라병 · 결핵병 검사결과
-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 **23 (**)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24 ()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평가원 장
-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25** ()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른다.
- **26** ()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 27 ()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 · 통보, 변경신고
-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
-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 · 관리
-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 14. 삭제<2017. 6. 2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8 삭제 <2017. 6. 28.>
- **29**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2.〉
 -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 · 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 ② 삭제<2018. 12. 24.>

<제404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